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3. 17 선고 2013가단5942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재판경과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10. 14 선고 2015나21877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3. 17 선고 2013가단59426 판결

전문

원고 A

피고 B

변론 종결 2015. 2. 3.

판결 선고 2015. 3. 17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8. 1. 접수 제52544호로 마친

2007. 7. 31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[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가. 별지 목록 기재 ① 부동산에 대하여 1977. 11. 28.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2007. 8. 1.에 2007. 7. 31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나. 별지 목록 기재 ② 부동산에 대하여 1993. 10. 5.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, 2007. 8. 1.에 2007. 7. 31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하고,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'이 사건 등기'라고 한다).다. 이 사건 등기는 2007. 7. 31.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에 의하여 신청되었고,피고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의 원고 기명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.

2.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,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인 2007. 7. 31.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위임또는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,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, 피고는,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, 2007. 7. 31. 피고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어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므로, 이 사건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 단

살피건대,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증인 C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07. 7.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,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의 원고 기명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, 그 이후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 말하기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러한 사정에 원고는 2013. 9. 초순경 막내아들의 결혼식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,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(갑 제1호증의 1, 2)의 발급일자는 2013. 8. 22.로 적어도 원고는 위 일자에 이 사건 등기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이는 점(피고가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자, 원고는 2013. 8.경 이 사건 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), 원고는 피고와의 녹취록(갑 제4호증)을 증거로 제출하면서, '왜 이 집 당신앞으로 등기했어?'라는 원고의 물음에 피고가 '당신이 내 명의로 등기하라고 해서 한거잖아'라고 말한 부분(갑 제8호증)은 제외한 채 제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이 사건 등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준영

부동산 목록

1. 서울 광진구 D 대 155m²

2. 위 지상

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(6가구)

1층 및 지층 각 65.76m²

2층 66.76m². 끝.

